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26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각종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이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협약 등의 관리(안 제5조)
- 라. 의회 보고 등(안 제6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제정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정의에 대하여,

※ MOU(양해각서)와 MOA(합의각서)의 차이점

-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정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하며,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예외 규정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협약 등의 관리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
 - 법제처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가 어렵고, 의회 보고의 경우 반드시 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및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구청장의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대한 보고가 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 향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법제처 의견제시 22-0011)
- 참고로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제언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